
국립공원 관리업무 내무부로 이관

專門部署 놔두고 他部處 이관은 理解안가

國立公園의 管理體系에 대하여 大統領으로부터 改善 檢討指示가 있었던것이 금년초 농림수산부 년두 순시때의 일이었다.

이것은 林業人은 물론 많은 專門家들이 現在 建設部에서 管掌함에따른 不合理와 모순, 山主의 不利益등을 평소 제창하여옴에 따라 이자리에 참석하였던 本會 理事 金應九篤林家(경북, 영양)가 대통령에 직접 건의함으로써 肯定的으로 받아드려져 山林廳에서 管掌하는 방향으로 檢討指示가 있었던것에 연유한다.

이에따라 그동안 總理室에서는 많은 專門家들의 자문을 받아 檢討끝에 山林廳에서 管掌하는 방향으로 機能調整作業이 進行된것으로 알려져 篤林家뿐만 아니라 全 林業界에서는 期待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90. 10. 22 總務處의 發表에 의하면 建設部에서 내무부로 이관했다는 消息을 接함으로써 저오기 놀라움과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첫째는 國家最高 統治權者인 大統領의 肯定的인 檢討指示에 따라 關係當局에서 專門家들이 充分한 期間동안 檢討된 것이 어떻게 갑작스레 뒤바뀜으로서 統治權者의 權位에 흠결을 초래케 하느냐 하는 것이다.

물론 아무리 位相이 높은 統治權者의 指

示事項이라 하더라도 모순과 不合理함을 甘受하면서까지 盲目的으로 服從해야 할 理由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山林廳에서 맡아한다고할때 과연 그러한 모순과 不合理한 點이 있다는 것일까,

둘째 우리는 山林廳을 결코 두둔하고 싶은 生覺은 추호도 없다. 다만 國立公園의 重要性和 함께 個人的으로는 山林을 管掌하지 않는 非專門部署에서 管掌함에 따른 山主들의 不利益 即 山主의 立場은 전연 度外視하고 入場料만 챙기는등 많은 不利益을 甘受해야 하는 까닭이다. 미우나 고우나 山林의 行政이나 管理는 당연히 山林을 다루는 專門部署에서 다루어 주어야. 山主의 權益을 옹호받게 되는 것임은 물론이다.

그리고 國立公園하면 누구나 山林이 연상되고 山林은 山林을 다루는 전문기관에서 다루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다른 論理가 무엇때문에 필요한 것인가?

현재 전체 국립공원의 면적은 총 664천 ha로써 이중 陸地 379천 ha의 98%에 해당하는 337천ha가 山林이다.

또 海上國立公園 265천ha가 있지만 이것은 海上國立公園이라해서 단순한 바다만을 대상으로 指定된것이 아니고 주변의 아름다운 海岸의 山林이나 도서(섬)로 둘러

쌓인 景觀이 아름다운 山과 나무가 存在하기 때문임은 물론이다.

따라서 海上國立公園도 山林과의 연계는 不可分の 것이기 때문에 굳이 部署를 따진다면 山林廳이 管掌한다해서 하나도 모순됨이 없고 오히려 당연한 것이다.

外國에서도 대부분의 국가는 自然資源을 다루는 山林部署에서 管掌하는 곳이 많다. 獨逸, 美國, 프랑스, 南美諸國, 스웨덴, 태국, 캐나다, 인도네시아등 여러나라가 山林部署에서 관장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앞으로도 거의 모든 나라들이 産業化 과정에서 오는 公害問題와 國民레저 需要 充足을 위하여 國立公園은 확대일로에 있고 우리도 장차는 全國土의 公園化를 시도해야 할 형편에 있다. 이에따라 國有林이던 私 有林이던간에 이山林을 公益의利用과 經濟的의面을 어떻게 調和하느냐 하는것이 全體 山林에 當면한 課題인 것이다. 그래서 獨逸이나 美國같은 나라들은 公園이라 할지라도 合自然的인 적절한 山林施業을 해 나가게 하므로써 林產物도 生産하고 自然生態系의 維持로 公益目的도 최대한 發揮토록 하고 있다.

이것은 지극히 林業技術이 隨伴되는것이므로 山林部署에서 管掌해야 올바르게 管理를 할 수 있을것이다.

지금의 公園管理는 自然生態系 維持增進은 放置한채 入場客管理에만 급급한 나머지 自然은 自然대로 훼손되고 있는 實情이다.

뿐만아니라 한번 公園으로 指定되면 山林施業이 사실상 禁止상태에 있어 수십년간 막대한 資金과 精力을 쏟아 造林을 하고 管理를 하여온 山主들에게는 아무 補償制度없이 名目上의 山主노릇만 하고 所有權

行使가 정지된것이나 다름없는 狀態이다보니 많은 民怨마저 若起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등 山林施策의 모순은 가뜩이나 造林 投資意慾을 低下시키는 要因으 加重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問題등의 解決方案으로서는 다행히 현재 山林廳에서 기왕에 實施하고 있는 國有林野管理 特別會計로 私 有林을 買收하여 國有林을 擴大해 나가고 있으므로 그 一環事業으로 公園에 編入된 私 有林을 우선 買收하거나 他國有林과의 交換등으로 民怨을 解消할 수 있는 지름길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現在와 같이 國立公園이 山林廳이 아닌 他部處의 所管으로 있는限 山林廳이 이를 買收하지 않고 있는것을 그르다고 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山林과 무관한 非專門部署에서의 관리에 따른 문제와 山主는 山主대로 不利益을 甘受해야 하고 二元體制의 制度的 不合理에서 오는 不便함이 많은 것이다.

뿐만아니라 지금 世界的인 林業思潮는 山에서 나무만 生産하기 보다는 山林을 休養林, 自然學習林, 樹木園등을 連繫的으로 運用하여 날로 急增하는 國民레저 需要에 對備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때마침 우리나라도 지난 1월에 公布된 改正 山林法에서 이와관련된 休養林, 樹木園造成등에 관한 規定이 넣어져 있으므로 公園의 機能과 脈을 같이하는 이들과 連繫 運用할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마련되었다고 할수 있다. -편집자